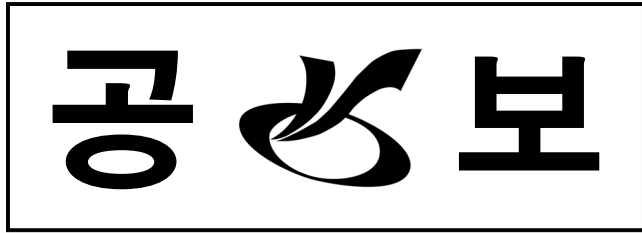


인천광역시서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



선 람	기관의 장

제 578호

2007년 5월 9일 수요일

차 례

규 칙

- 인천광역시서구규칙 제674호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인적자원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2

공 고

-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7-445호 공고문(확인서발급신청사실) 8
-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7-446호 공고문(확인서발급신청사실) 9
-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7-452호 경서2구역 도시개발사업 집단환지 지정 추가신청 공고 10

회 람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인천광역시서구

편집 : 문화공보과

규 칙

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인적자원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이 학 재

2007년 5월 9일

인천광역시서구규칙 제674호

**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인적자원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
시행규칙**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인적자원관리센터 설치 운영조례」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인적자원관리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의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2장 운영위원회

제3조(설치) 센터의 운영 및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인적자원관리센터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4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
1. 센터의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
2. 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사항
3. 센터의 내부규정 제·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
4. 기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5조(위원회의 구성)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.

②위원 중 당연직은 구청의 주민복지과장, 센터의 장(이하 “소장”이라 한다)이 되며 위촉직은 서구의회 의원, 노인정책 추진기관장, 유관기관단체장, 기타 노인복지 업무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소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- ③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-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- ⑤위원회의 간사는 센터의 팀장으로 한다.

제6조(위원장 등의 임무)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임무를 총괄한다.

-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7조(위원회의 회의) ①위원회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한다.

- ②정기회는 연2회 위원장이 소집하며,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.
-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④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써 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경미한 안건은 서면 의결로 대체할 수 있다.
- ⑤위원회의 의사록에는 회의결과를 기록하고, 의결사항은 의결된 날로부터 7일 이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8조(수당 등)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중 인천광역시 서구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「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」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3장 정원, 인사, 보수, 복무관리

제9조(직원의 정원) 센터의 직원은 소장, 부장, 팀장, 운영요원 등 4인으로 하고, 필요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.

제10조(직원의 임용) ①직원은 신규채용 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.

- ②소장은 구청장이 임용하며, 이하 직원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장이 임용한다.
- ③직원의 임기는 2년이며, 실적평가를 통하여 재임용할 수 있다.

제11조(직원신분보장) ①직원은 형의 선고, 징계처분 또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, 강입, 면직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.

-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지원액의 증감과 직제개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인원 증감 및 직제 조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- ③센터 소장의 정년은 65세로하고 기타 직원은 60세로 한다.

제12조(자격요건) 센터 직원의 자격기준은 <별표1>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
제13조 (조직체계 및 임무) 센터의 조직체계 및 임무는 <별표2>와 같다.

제14조(보수) ①센터 직원의 보수지급 일은 지방공무원 보수 지급일로 한다.

- ②센터 직원의 보수는 봉급, 기말수당, 정근수당 등을 총합산한 연봉제로 한다.

③연봉은 연봉월액으로 지급하며, 직원의 연봉지급액은 예산범위 내에서 구청장의 승인을 거쳐 결정하며, 실적평가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.

④연봉은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율을 반영할 수 있다.

제15조(복무) 센터 직원의 출장, 근무시간, 휴가 등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「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」를 준용한다.

제4장 회계 및 재산관리

제16조(재원) 센터 운영 및 노인일자리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.

1. 구 보조금
2. 기타수익금 등

제17조(회계관리) ①센터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.

②센터의 회계 관리는 구의 지도·감독을 받으며, 자금은 반드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.

③구청장은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센터 회계 등에 관하여 연1회 이상 지도감독을 하여야 하며 필요시 센터의 사업 및 예산운영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검사를 할 수 있다.

④센터 회계에 관하여는 「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규칙」을 준용한다.

제18조(물품의 관리) ①센터의 소장은 물품관리직원을 지정하여 물품의 취득, 보관, 폐기 등에 대해 장부를 비치하고 전반사항을 관리한다.

② 물품 및 장비관리는 「인천광역시 서구 물품관리조례」를 준용한다.

제19조(보조금 관리) ①센터 소장은 보조금의 교부조건과 목적에 따라 성실히 집행하여야 한다.

②보조금은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고 수입, 지출내역은 장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.

③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 등 기타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「인천광역시 서구 보조금관리조례」를 준용한다.

제20조(자료요구 및 검사) 센터의 소장은 구청장이 센터 사업 및 예산운용에 관하여 자료를 요구할 때는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하며, 검사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제21조(결산) 센터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결산서 1부.
2. 사업실적보고서 1부.
3. 재산목록 및 재산증감사유서 1부.
4. 위원회 의사록 사본 1부.
5. 위원 및 직원명부 1부.

제5장 공인관리

제22조(공인) ①센터는 다음 각 호의 공인을 제작 관리하여야 한다.

1. 인천광역시서구노인인적자원관리센터소장 직인
 2. 인천광역시서구노인인적자원관리센터센터운영위원장 직인
 3.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작한 직인
- ②공인의 글씨는 한글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며 규격은 <별표3> 과 같다.
- ③공인의 관리는 소장이 하며 기타 공인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「인천광역시서구공인관리조례」를 준용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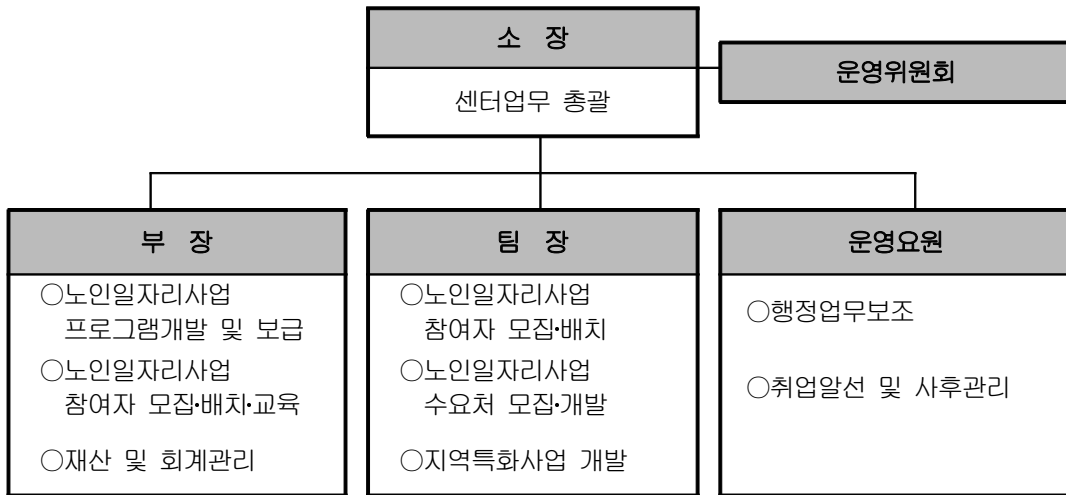
[별표 1]

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인적자원관리센터의 직원 자격기준

구분	자 격 기 준
소장	1. 대학에서 사회복지학과 전임강사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.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사회복지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6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. 지역사회복지 또는 노인일자리 및 취약계층 일자리 활동 경험이 5년 이상 있는 자
부장	1. 대학에서 사회복지학과 조교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.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사회복지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. 지역사회복지 또는 노인일자리 및 취약계층 일자리 활동 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 5. 직업상담사 자격을 취득하고 관련 업무에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
팀장	1.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8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사회복지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. 지역사회복지 또는 노인일자리 및 취약계층 일자리 활동 경험이 2년 이상 있는 자 4. 직업상담사 자격을 취득하고 관련 업무에 1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
운영요원	1. 전산기사, 워드프로세서 등 컴퓨터 관련자격증(2급 이상)을 소지한 자 2.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사회복지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

[별표 2]

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인적자원관리센터 조직체계 및 임무



[별표 3]

인천광역시서구노인인적자원관리센터운영위원회위원장인

3cm	
인천광역시서구 노인인적자원관 리센터운영위원 회위원장 인	3cm

인천광역시서구노인인적자원관리센터소장인

3cm	
인천광역시서구 노인인적자원관 리센터소장 인	3cm

공 고

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7-445호

공 고 문
(확인서발급신청사실)

「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사항을 공고하니 이해관계인은 공고일부터 2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.

- ① 부동산의 표시 : 인천 서구 오류동 636 (전 446㎡)
- ② 대장상 소유성명 : (한글) 이 용 희 (한문) 李 容 熙
- ③ 대장상 소유자등록번호 : 미 상
- ④ 대장상 소유자주소 : 인천 서구 오류동 629
- ⑤ 신청인성명 : (한글) 이 병 재 (한문) 李 秉 載
- ⑥ 신청인등록번호 : 340825-*
- ⑦ 신청인주소 : 인천 서구 오류동 630
- ⑧ 취득사유 : 1955년 2월 10일 증여
- ⑨ 공고기간 : 2007년 5월 8일 - 2005년 7월 7일 (2개월)
- ⑩ 통지불가사유 :
- ⑪ 유의사항

가.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청내용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.
나. 이의신청은 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.

2007년 5월 8일

서구청장 (인)

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7-446호

공 고 문
(확인서발급신청사실)

「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사항을 공고하니 이해관계인은 공고일부터 2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.

- ① 부동산의 표시 : 인천 서구 당하동 산161-25 (임 992㎡중 1/6)
- ② 대장상 소유성명 : (한글) 박 홍 서 (한문) 朴 鴻 緒
- ③ 대장상 소유자등록번호 : 460125-*
- ④ 대장상 소유자주소 : 인천 북구 십정동 51
- ⑤ 신청인성명 : (한글) 차 병 천 (한문) 車 炳 天
- ⑥ 신청인등록번호 : 491005-*
- ⑦ 신청인주소 : 인천 동구 송현동 89-24
- ⑧ 취득사유 : 1978년 6월 9일 매매
- ⑨ 공고기간 : 2007년 5월 8일 - 2007년 7월 7일 (2개월)
- ⑩ 통지불가사유 :
- ⑪ 유의사항

가.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청내용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.
나. 이의신청은 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.

2007년 5월 8일

서구청장 (인)

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7-452호

경서2구역 도시개발사업 집단환지 지정 추가신청 공고

우리 구에서 시행 중인 경서2구역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0조의3 제6항, 도시개발업무지침 43-2 규정에 의거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 및 공동주택(아파트) 건설을 위한 집단환지 지정 추가신청을 받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07년 5월 9일

인천광역시서구청장

1. 대상지역 : 경서2구역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종전토지 (공동주택 용지 중 일부)
2. 신청대상 : 경서2도시개발구역 내 토지 소유자 (1차 집단환지로 선정된 토지 제외)
3. 신청기간 : 2007. 5. 9. ~ 2007. 5. 22일(14일간)
4. 접수장소 :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 (☎ 032-560-4782~5)
5. 제출서류 : 집단환지 지정 신청서 및 구비서류 1부.
6. 결과발표 : 향후 신청자에게 개별통보(대표가 있을 경우 대표자에게 통보)적격한 신청자 (집단)가 많을 경우 추첨에 의하여 선정함.
7. 신청조건 : 붙임의 “집단환지 지정 신청서” 와 “공동주택지 집단환지 신청조건 및 유의사항”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이 공고에 대한 서류 송달은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였으며, 송달받지 못한 경우와 당초에 접수완료된 토지 소유자는 이 공고로서 갈음하겠으며,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(☎ 032-560-4785)